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
- 변경 사항: ① 제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 ② 투자위험등급 변경(4등급 → 5등급)
 ③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

□ 효력발생일: 2019. 11. 8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투자위험등급 변경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4 등급(보통 위험)	<u>5 등급 (낮은 위험)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 변경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4 등급(보통 위험)	<u>5 등급 (낮은 위험)</u>
투자비용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9. 06. 26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9. 06. 26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8. 31. 기준	<u>2019. 10. 31.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8. 31. 기준	<u>2019. 10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8. 31. 기준	<u>2019. 10. 31. 기준</u>
6. 집합투자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1클래스 가입 자격 추가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고액(I) :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고액(I) : <u>법시행령 제 10</u> <u>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</u>



			<u>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·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원 이상인 내국법인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 대상 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사항 반영	6) 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	6) 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표준편차 : 5.11%</u> 4 등급(보통 위험)	<u>표준편차 : 4.69%</u> <u>5 등급(낮은 위험)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2) 종류별 매입자격	I 클래스 가입 자격 추가	<u>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 : 최초 납입 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</u>	<u>⑩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 :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·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9. 06. 26. 기준</u>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9. 06. 26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9. 06. 26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8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9. 06. 26. 기준</u>